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 마련 등 >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88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95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8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95호)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1.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 마련 등	3
※ 참고자료	8
1.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일반 현황	8
2.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일반 현황	9

I.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8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중오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8.

다. 회 부 일 : 2025. 12.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군·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II.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9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8.

다. 회 부 일 : 2025. 12.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된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시·군·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 마련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금표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진중오 의원안 제9조의2 신설, 박덕흠의원안 제10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진중오의원안	박덕흠의원안
<신설>	제9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적정 임금표(이하 “경력별 임금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력별임금표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경력별임금표에는 호봉제, 장기근속수당,	제10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력별 표준 임금표(이하 “표준임금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표준임금표에는 호봉제, 가족수당, 상여금 등 복리후생에 관

	<u>상여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력별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u> ④ <u>제3항에 따른 인건비 지급실태의 조사·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③ <u>제2항에 따라 표준임금표에 포함되는 사항은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한다.</u>
--	---	--

다. 검토사항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¹⁾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²⁾으로서, 2025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스포츠지도사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2)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년 12월 기준 229개 시군구체육회 소속으로 2,800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도 장애인체육회,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1,000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³⁾.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수당 제외)는 평균적으로 국고 50%와 지방비 50%를 매칭하여 2026년 기준 1인당 278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을 경력에 무관하게 단일 기본급으로 책정하여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본 급여 외 제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큰 등의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는 경력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들의 이직을 야기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책정 현황]

(단위: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건비(수당 제외)	2,414,000	2,436,000 (+0.9%)	2,470,100 (+1.4%)	2,544,000 (+3.0%)	2,607,000 (+2.5%)	2,686,000 (+3.0%)	2,780,000 (+3.5%)
지도자 급여(기본급)	2,039,000	2,055,000 (+0.8%)	2,082,000 (+1.3%)	2,142,200 (+2.9%)	2,196,100 (+2.5%)	2,262,600 (+3.0%)	2,335,000 (+3.2%)
법정부담금 (개인부담제외) *기본급의 약 18.7%	375,000	381,000 (+1.6%)	388,100 (+1.9%)	401,800 (+3.5%)	410,900 (+2.3%)	423,400 (+3.0%)	445,000 (+5.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참고자료 1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일반 현황 및 참고자료 2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일반 현황 참고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임금표를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진중오 의원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유사한 사례로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박덕흠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 급여 외 제수당까지 포함한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를 100분의 50으로 부담할 것을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직업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들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이에 반해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유사직종과의 형평성, 기타수당에 대한 추가 국비 부담 우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 급여 외 제수당으로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박덕흠 의원안 제10조의2제4항에 대하여 “④ 국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중 100분의 50 이상 비용을 지원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1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일반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생활체육 현장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를 고정 배치하여 국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업대상)** 시군구체육회(229개)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2,800명
* '21년 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24.8월 100% 전환 완료)
- **(주요업무)**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 지도 및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생활체육 관련 상담·행정업무
- **('25년 예산)** 47,003백만원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 **(지원조건/수행주체)**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자체, 지방체육회 등

□ 2025년 배치정원 (단위: 명)

시·도	총원	일반	어르신	유소년	시·도	총원	일반	어르신	유소년
계	2,800	1,582	1,188	30	경기	326	185	136	5
서울	345	180	158	7	강원	198	124	74	-
부산	123	74	49	-	충북	137	74	63	-
대구	110	64	46	-	충남	193	108	78	7
인천	116	72	44	-	전북	168	79	86	3
광주	84	50	33	1	전남	261	125	135	1
대전	86	57	29	-	경북	248	139	107	2
울산	74	49	25	-	경남	255	160	95	-
세종	23	12	7	4	제주	53	30	23	-

□ 배치 연혁

연도	지도자 정원(명)					연도	지도자 정원(명)					연도	지도자 정원(명)				
	총원	일반	레저	어르신	유소년		총원	일반	레저	어르신	유소년		총원	일반	레저	어르신	유소년
2000	789	789	-	-	-	2010	1,950	1,450	-	500	-	2020	2,800	1,532	12	1,229	27
2001	789	789	-	-	-	2011	1,950	1,400	-	550	-	2021	2,800	1,552	9	1,212	27
2002	789	789	-	-	-	2012	2,212	1,400	-	812	-	2022	2,800	1,570	-	1,202	28
2003	789	789	-	-	-	2013	2,230	1,400	-	830	-	2023	2,800	1,579	-	1,192	28
2004	839	839	-	-	-	2014	2,480	1,400	-	1,080	-	2024	2,800	1,587	-	1,183	30
2005	917	917	-	-	-	2015	2,480	1,400	-	1,080	-	2025	2,800	1,582	-	1,188	30
2006	1,250	1,000	-	250	-	2016	2,600	1,400	-	1,200	-						
2007	1,400	1,100	-	300	-	2017	2,600	1,400	-	1,200	-						
2008	1,550	1,200	-	350	-	2018	2,600	1,401	-	1,199	-						
2009	2,200	1,600	-	600	-	2019	2,740	1,475	21	1,228	16						

□ 2020년 이후 인건비 상승 추이

- 최근 5년 평균 2.2%, 최근 3년 평균 2.8%, '25년 3.0%, '26년 3.5%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건비(수당 제외)	2,414,000	2,436,000 (+0.9%)	2,470,100 (+1.4%)	2,544,000 (+3.0%)	2,607,000 (+2.5%)	2,686,000 (+3.0%)	2,780,000 (+3.5%)
지도자 급여(기본급)	2,039,000	2,055,000 (+0.8%)	2,082,000 (+1.3%)	2,142,200 (+2.9%)	2,196,100 (+2.5%)	2,262,600 (+3.0%)	2,335,000 (+3.2%)
법정부담금(개인부담제외) *기본급의 약 18.7%	375,000	381,000 (+1.6%)	388,100 (+1.9%)	401,800 (+3.5%)	410,900 (+2.3%)	423,400 (+3.0%)	445,000 (+5.1%)

※ 참고자료 2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일반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지역 내 장애인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
- **(사업대상)**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000명**
- **(주요업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동호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관련 상담·행정업무
- **(‘25년 예산)** 16,206백만원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 **(지원조건/수행주체)**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자체,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 2025년 배치정원

(단위: 명)

시·도	총원	시·도	총원
계	1,000	경기	140
서울	117	강원	46
부산	54	충북	46
대구	32	충남	127
인천	69	전북	67
광주	44	전남	54
대전	34	경북	45
울산	37	경남	46
세종	18	제주	24

□ 배치 연혁

(단위: 명)

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원	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원
2007	21	2017	450
2008	32	2018	577
2009	128	2019	800
2010	136	2020	1,000
2011	136	2021	1,000
2012	190	2022	1,000
2013	230	2023	1,000
2014	230	2024	1,000
2015	292	2025	1,000
2016	292		

□ 2020년 이후 인건비 상승 추이

- 최근 5년 평균 2.2%, 최근 3년 평균 2.8%, '25년 3.0%, '26년 3.5%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건비(수당 제외)	2,414,000	2,436,000 (+0.9%)	2,470,100 (+1.4%)	2,544,000 (+3.0%)	2,595,000 (+2.0%)	2,686,000 (+3.5%)	2,780,000 (+3.5%)
지도자 급여(기본급)	2,039,000	2,055,000 (+0.8%)	2,083,770 (+1.4%)	2,142,200 (+2.9%)	2,185,200 (+2.0%)	2,262,600 (+3.5%)	2,335,000 (+3.2%)
법정부담금(개인부담제외) *기본급의 약 18.7%	375,000	381,000 (+1.6%)	387,650 (+1.7%)	401,800 (+3.7%)	409,800 (+2.0%)	423,400 (+3.3%)	445,000 (+5.1%)